

실업급여 반환명령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

고용보험법 제61조, 제62조,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및 제105조에 의거 마** 에게 ‘실업급여 반환명령 결정 통지서’를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·폐문부재 및 주거불명(행정주소)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.

2026. 8. 4.

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시청



1. 공고번호 :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시청 제2026-80호
2. 공고기간 : 2026. 8. 5. ~ 2026. 8. 19.
3. 공시장소 : 고용노동부 청주시청 홈페이지 및 전국 지방고용노동 관서
4. 공고내용 : 붙임 참조

실업급여 반환명령 결정 통지 관련 공시송달 명단

(공고기간: 2026. 8. 5. ~ 2026. 8. 19.)

연 번	성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송달불능 사유
1	마**	'99.04.12.	인 천 광 역 시 부평구 (이하생략)	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 결정통지서	-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한 사실이 있으나, 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업인정 신청하여 구직급여 수급 ○ 부정수급액 등 반환명령액: 3,960,000원	수취인 및 폐문부재 등

2026. 8. 4.

1

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

